

[] 전입 [] 재등록신고서(☐ 재외국민 ☐ 해외체류자)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에 살던 곳	구분	[] 세대 모두 이동 []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은 세대주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구분	[] 세대 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가구주택 명칭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동		층 호	

* 신고 대상자 (총 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영주 국가 (지역, 재외국민만 해당)	체류 자격 (재외국민만 해당)	비 고
1					
2					
3					
4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 전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입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전(前)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입 사유 (※주된1가지)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거 환경 (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그 밖의 사유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 전입 []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재외국민(또는 해외체류자) 본인과의 관계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2.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해외체류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한 사람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거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직접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재외국민 본인 또는 해외체류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이민 출국 또는 현지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은 현 거주지에서 재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17세 이상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2.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해외체류신고하였거나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지와 현 거주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며, 17세 이상 해외체류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3.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의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5. 거짓 전입, 무단 전출을 하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6. 전입 사유 칸에 「통계법」에 따른 인구 이동 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7.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www.korea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前)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 일부가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전입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전 세대주나 본인(전입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을 작성합니다.
6. '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7. '영주 국가' 칸에는 영주 하고 있는 국가명과 함께 () 안에 지역의 명칭을 작성해야 합니다.
8. 체류 자격은 영주, 가족 체류, 유학, 취업, 투자, 상용(商用), 공무, 기타(자세한 내용) 중에서 주된 사유 하나를 적습니다.
9. '연락처' 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10.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명칭·층·호수' 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제공될 수 있고, 이를 작성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주소(동·층·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 및 학령 아동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